계약학과 운영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채용조건형 계약학과"라 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 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.
 - 2. "재교육형 계약학과"라 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, 직무능력향상, 전직(轉職)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.
 - 3. "공공기관"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.
- **제3조(계약학과의 명칭、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)** ①계약학과의 명칭,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와 같다.
 - ②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학칙 제6조에 불구하고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- **제4조(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)** ①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.
 - ②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(학기 및 수업일수) ①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며, 계약에 의하여 방학을 이용한 집 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②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.
 - ③수업은 출석수업, 현장실습수업,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(계약학과 운영요령)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,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6조(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) ①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,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.
 - ②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 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- 제7조(설치、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) ①계약학과의 설치、운영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,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한다.
 - ②계약학과가 그 설치、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、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,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.
 - ③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, 징계해고,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
 -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산업체등의 도산, 구조조정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·계속되는 휴업(휴직) · 사업장 이전 ·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⑤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,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(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하는 경우

에 한한다.

⑥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 약학과에서 맡는다.

제8조(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등 납부)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(학생 납부금을 포함한다)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.

②계약학과를 설치.운영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학과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

제10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균관대학교학칙 및 동 시행세칙, 당해 대학 학사내규, 교육부령(계약학과 설치·운영규정)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3조 별표의 개정 규정 중 융합형기계설계학과 관련 부분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		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		
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		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취		
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		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		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		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기술경영학과는 2016년 2월 29일자로 폐지하되, 폐지일 현재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.				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3조 별표의 개정 규정 중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관련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다.				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		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		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		
	부	칙		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일부터 시행한다.	부 제3조	칙 별표의 융합의과학과 정원조정사항은 2021년 8월 30
이 규정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	부 제3조	칙 제1항 별표의 소재부품융합공학과 계열 신설 반영은
이 규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단,	부 제3조	칙 제1항 별표의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신설은 2023년

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